

##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-514호

「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운영 규정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0월 30일

중소벤처기업부장관

### 「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운영 규정」 제정안 행정예고

#### 1. 제정 이유

선진 벤처금융기법\* 도입을 위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개정('23.6.20.공포, '23.12.21.시행) 후속 조치로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에 대해 고시에 위임된 사항 규정

\* 투자조건부 용자 계약(Venture Debt), 조건부지분전환계약(Convertible Note), 투자 목적회사(SPC)를 통한 벤처펀드의 레버리지 투자 허용 등

#### 2. 제정안 세부 내용

##### ① 용자 계약의 요건인 투자방법

- 용자 수혜기업의 요건 중 고시로 위임된 투자의 방법을 벤처투자법상 '투자'로 인정되는 방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

\* (투자의 범위, 벤처투자법 제2조) 주식지분 인수, 전환사채·신주인수권부사채·교환사채 인수, 조건부지분인수계약(SAFE)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(Convertible Note)의 체결 중소기업 프로젝트 투자

##### ② 용자기관의 신주배정 한도

- 용자기관의 금리인하 소요비용 및 신주배정 예상 수익 등을 감안, 법에서 상한선(10% 이내)을 위임한 용자기관의 신주배정 약정 비율을 용자총액의 5%로 명시

### ③ 용자기관과 투자기관의 상호제공 자료

\* 자료 상호제공에 대한 용자 수혜기업의 사전 동의 필수

- (용자심사 자료) 경영능력 분석, 기술성 및 사업성 분석, 부채 위험 및 담보가치 분석 등
- (투자심사 자료) 산업 분석, 제품·기술 및 서비스 분석, 기업가치 분석, 투자 수익성 및 위험 분석 등

3. 행정예고(공고) 기간 : 2023. 10. 30.~11. 20. (21일)

### 4. 의견 제출

- 「투자조건부 용자 계약 운영 규정」 제정안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3년 11월 20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(벤처투자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

- 의견제출 방법 : 방문, 우편, 전자우편

- 방문·우편 : (30121) 세종시 가림로 180 (세종파이낸스센터 3차),  
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

- 전자우편 (이메일) : kimyh6887@korea.kr, sh983@korea.kr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(044-204-7711, 771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(www.mss.go.kr) “알림소식-법령정보-입법/행정예고”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